

제434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임시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4월14일(화)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3.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6.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3)
1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5)
1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0)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7)
1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5)
1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1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2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1)
2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
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
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
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0)
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9)
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0)
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3)
3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7)
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3)
3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3)
3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4)
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8)
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1)
4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1)
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7)
4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1)
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8)
4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4)
4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9)
4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0)
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4)
5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6)
5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0)
5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3)

5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5)
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2)
5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6)
5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9)
58.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0)
5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5)
6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8)
6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6)
6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1)
6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30)
6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6)
6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5)
66.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97)
67.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9)
6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61)
6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7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7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7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3)
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3)
7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98)
7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5)
7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3)
7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2)
7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40)
8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6)
8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6)
8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0)
8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7)
8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8)
8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3)
8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9)
8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7)
8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5)
8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7)

9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0)
9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2)
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8)
9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0)
9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21)
9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3)
9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3)
9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8)
9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7)
9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30)
10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892)
1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75)
10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84)
10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2)
10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76)
10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1)
10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4)
10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2)
1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01)
10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1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11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11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0)
11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11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45)
11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1)
11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3)
11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0)
1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7)
11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1)
12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5)
12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8)
1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9)
12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5)
1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86)
12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12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12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12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2)
12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9)
13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4)
13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3)
132.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4)
13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7)
13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9)
13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7)
13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8)
13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4)
13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8)
13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3)
14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14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
14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371)
143.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31)
14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3)
14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4)
146.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3)
147.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1)
148.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1)
149. 농어업회의소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0)
150. 농어업회의소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151.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152. 농림어업회의소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5)
153. 농어업회의소법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2)
154. 농어업회의소법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65)
155. 농어업회의소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28)
15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4)
15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86)
1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19)
15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43)
160.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60)
16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13)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9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9
3.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9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9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9
6.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9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9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9
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9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9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9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9
1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3)	25
1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05)	25
1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00)	25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07)	25
1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5)	25
1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30
1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32
2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32
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1)	32
2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32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35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35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35
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	35
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	35
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	35
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0)	35
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9)	35
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0)	35
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3)	35
3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7)	35
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3)	35
3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3)	35
3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4)	35
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8)	35
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35
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35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36
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36
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1)	36
4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1)	36
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7)	36
4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1)	36
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8)	36
4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4)	36
4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9)	36
4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0)	36
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4)	36
5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6)	36
5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0)	36
5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3)	36
5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5)	36
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2)	36
5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6)	36
5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9)	36
58.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0)	36

5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5)	72
---	----

(10시10분 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이만희 위원 우리가 소위를 함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두 번의 소위에서 저희 당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님께서 안건이라든지 회의 날짜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 당과의 어떤 협의나 합의 절차가 상당히 부족했고 어떤 면에서는 윤준병 위원장님의 독단적인, 일방적인 회의 운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불참하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웃고 계시는 그런 표정이 저한테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열리신 마음으로 비록 소수지만 우리 야당의 얘기도 좀 많이 들어 주시고 같이 서로가 논의한다는 차원에서, 오늘은 이런 소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농해수위원회를 거의 10년 가까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소위 진행 자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사실 제가 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도 어느 정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유감의 표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었으면, 회의 진행 전에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좋은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국회법에 정의된 대로 양당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서 안전 조정하고 또 의사일정도 만들고 이렇게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예전에 이만희 위원님께서 우리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말씀 주신,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의견도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심지어 그 안전,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면 우리 소위원회를 별도

열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도 제가 제시한 바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느끼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으로서 회의 운영은 전체적으로 야당의 의견과 여당의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또 존경하는 야당 간사님 의견도 존중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니까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1)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2)
3.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성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0)
4.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1)
5.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6)
6.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8)
7.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3)
8.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9.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67)
1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8)
1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13)
1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4)

(10시15분)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12항까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예전에 두 번에 걸쳐 소위에서 의견 조율을 하고 심사를 한 내용이니만큼 전체적인 내용을 좀 축약해서 심사된 결과 위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1항부터 12항까지 12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달에 두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 심사를 하였고 또 잠정 심사 결과를 각 위원님들께 정리한 자료를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지난번 소위원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농업생산기반 약화와 임차농 보호에 대해 우려하신 의견도 있었고 또 법률안의 여러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지난번에 제시하였던 수정의견의 조문별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를 보시면 수정의견의 조문별로 심사 당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검토하고 또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마련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 잠정 심사 결과라고 하는 게 지난번 소위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5페이지 보면 1조(목적) 규정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목적 중 하나가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과 또 농업생산기반 약화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계신 점을 감안해서 목적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 외에 농업생산기반을 보존하는 것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2조(정의)는 종전 수정의견과 변동이 없고,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인해서 농업생산기반이 약화되거나 농업생산성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4조는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의 제5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일부 자구를 정리하고 또 발전설비 소재지를 규정함에 있어 발전설비 소재지상 읍·면·동 외에 다른 시·군·구를 포함한 연접한 읍·면·동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지 외에 연접한 읍·면·동이 포함되도록 수정을 하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29페이지의 6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에 관한 조항은 일부 체계·자구를 조정한 문구 수정이 있었고, 발전 부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 중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로 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에는 그 밖의 농지에서도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7조는 종전과 동일하고.

30페이지의 8조(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에 관한 규정은 허가 요건을 직접적으로 명시해서 규정을 하게 하고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사업 허가 시 규모를 제한하는 것 외에 필요한 경우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9조는 경미한 수정이 있었고, 10조도 농식품부장관과의 협의 문구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하였다는 걸 말씀드리고, 11조도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의 12조는 사업자의 지위 승계 규정을 보완해서 법인의 합병·분할의 경우도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승계일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고.

13조는 제5항의 수익 배분 규정이 금원의 수익을 개인별로 배분하는 의미로 한정되어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수익 중 일부를 환원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표현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14조는 종전과 동일하고.

15조는 취소 사유에 추가를 해서 주민참여조합의 발전사업자 자격 상실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자격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였고 또 사업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 규정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명하도록 문구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

그다음에 40페이지의 16조(과징금) 규정은 과징금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도록 부과 요건을 변경하였고.

17조는 종전의 수정의견과 같고.

그다음에 18조(임차인 보호 등) 규정에 표준계약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일부 자구 수정을 빼고 다 종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만 차관님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를 농지에 설치해 식량 작물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모델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렇지요. 농지 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를 추진한 적 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실증연구 결과 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71%까지 수확량이 감소한 사례 파악되었지 않습니까? 실증 결과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동안 연구를 했는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70%까지 된 것은 굉장히 극히 예외적이고요, 전반적으로는 10~20% 정도 수확 감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글쎄, 그래서 일부 파종 후 영농관리 부실 측면이라는 게 정부 입장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영농관리 부분도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도 관리가 쉽지 않은 면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일단은 농업인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모듈 면적은 30%로 제한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체계를 저희들이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영농형 태양광 중점 추진하려고 하면 이와 관련된 내용도 별도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과정 속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충분하게 보고를 못 한……

○김선교 위원 그런데 보고도 한 번 안 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올려놓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사항도 지금까지 그래 왔고. 그렇지요?

농작물 생산을 유지하려면 작물·토양·기후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 부분도 검증이 좀 불충분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농형 태양광은 저희들이 1~2년 한 것이 아니라 한 15년 정도부터 계속해 왔고 한 10년 정도 노하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농대라든가 여러 가지 대학을 통해서 실증……

○**김선교 위원** 글썽, 노하우는 있지만 이 데이터 자료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현재 작물별로 생산량 감소한 것 연구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현장 실증이라든가 대학 연구를 통해서 상당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확보를 했고요. 품목에 따라서 10~20% 정도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이터도 있고, 일부 벼의 경우에는 감소가 없었다는 그런 데이터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정부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치하고 이런 것 다 대출 아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태양광을 할 때는……

○**김선교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얘기해 일인당 2억 이상 대출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 막아 놔 가지고? 그렇지요?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이런 것 다 검토를 해 봤나 이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태양광이 농업인 소득에……

○**김선교 위원** 이 원금 상환이 몇 년 차부터 됩니까? 6년 차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자본회수 설계는,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기간은 20년 정도로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 한번 짧게만 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농업인 소득에 도움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차료라든가 사업할 때 기후부로부터 받는 정책자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600평 정도 농업인들께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시면 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었습니다.

○**김선교 위원** 전기를 판매하지 못했다, 대안은 어떻게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기본적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데만 저희가 발전사업 허가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기후부하고 구체적으로 전력계통에 대해서는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왜냐하면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우려사항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30쪽의 발전사업 허가 관련해서 1항에 보면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는 농식품

부에서는 동의 절차, 그러니까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된 것을 어떻게 시행령에서 마련할 계획인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마을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든다면 마을 주민 수가 많다면 한 50% 주민동의, 마을 수가 적으면 한 70% 주민동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주민동의를 얻어서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은 갈등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실제로 태양광 시설을 할 때 주민동의 얻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흥구역의 경우는 지구 지정을 받아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얻는 것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수월할 것 같은데 읍·면·동이라고 하면 이게 어느 범위까지의 동의가 필요한지, 다른 지역에 살면서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경우인지. 그러니까 농지 중심의 동의인지 거주민 중심의 동의인지 이것도 사실은 좀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주민동의서라는 게, 동의서 받는 것을 결국은 진흥구역 바깥의 경우…… 진흥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상대적으로 동의를 받기가 수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흥구역이 아닌 경우에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면 이것 결국 농가가 다 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농가가 받아야 되는데 이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해 보면.

그런데 그전에는 주민동의서가 법적인 요구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이게 행정소송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법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실제로 많은 경우에 저는 설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동의라는 것을 법적인 요건으로 집어넣으실 거면 조금 더 현장 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시행지침들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부에서 정리된 내용은 없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기보다는, 예를 든다면 햇빛소득마을의 경우에는 마을 주민의 동의가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지구에서 하는 집단화된 영농형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인접 주민들, 주로 몇 개 마을 정도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는 개인형 영농형 태양광하고는 조건이 달라야 된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직 정리된 것은 없냐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이것 의견들 많이 들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조건 때문에 어떤 법에서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라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집어넣어 놓으면 의견수렴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것도 지구 지정이 되어서 단체로 하는 경우에, 마을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농민들이 진흥구역 바깥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할 때 과연 주민동의를 얻는 절차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개별 농가가 이행하는 게 가능할까, 저는 이것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이런 것이 실제로 영농형 태양광이 보급되는 데 발목을 잡을 수 있더라

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목적에 ‘생산기반 보전’ 이렇게 넣어 놓으셨는데…… 어쨌든 식량안보에 필요한 농지 유지, 제가 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6조의 부지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가 이 목적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녹여 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농형 태양광도 식량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농지 유지를 한 후에 효율적 이용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농업진흥지구 외로 정한 것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지구를 정할 때, 그때도 제가 질의했을 때 농식품부가 재생에너지지구를 정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지구로 정하는 그 지정지에도 농업진흥지구 외 지역으로 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2항의 ‘농식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는 농업진흥지구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렇다면 시장·군수하고 농식품부장관하고 만약에 의견이 일치하게 되면 진흥지구까지 다 해 버릴 거고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우선권을 갖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무계획적으로 농지가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지구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니, 그런데 재생에너지지구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재생에너지지구나 농업진흥지구 외 지역에서 주민참여협동조합이 할 경우에 농식품부장관이 시장·군수가 이것을 허가를 내는 거지요. 발전 허가를 내는데 농식품부장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협의가 만약에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제가 물어본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사업 신청할 때 마을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군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자료 보니까 협의 관련해서 임호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39페이지 보면 원상회복과 관련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상당한 기간은 언제까지가 상당한 기간입니까? 이것도 조금 의미 없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시행령으로 별도로 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각자가 해석하는 게 다 다를 텐데 이렇게 모호한 표현을 넣는 것이 어떤 건지, 이런 게 그냥 조금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표준계약서 작성’, 이것을 보완하신 겁니까? 임차인 보호 대책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완하신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전종덕 위원 이렇게 하면 우려되는 지점들이 보호가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임차농 보호는 저희들이 많은 모의실험을 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날 거냐, 굉장히 많은 모의실험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우려사항은 시행령에서 다뤄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솔직히 우려사항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고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뒤도 악용이 되고 금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원취지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서 정말 농지를 빼앗기지 않고 농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주가 다 이것을…… 임차인에게 농지를 임차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가 더 있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기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은 해당 필지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만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임대농·임차농의 갈등 부분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전종덕 위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1차 질문을 마치면서……

○임미애 위원 갈등이 생겨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소위원장 윤준병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는 임미애 위원님의 말씀에 아주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힘듭니다. 무슨 애긴지 아시지요? 두루뭉실하게 해 놔야 돼요. 그리고 시행령에 위임이 됐든 어쨌든 시장·군수…… 왜냐하면 그것이 지역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확 정해 놓으면 주민들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난리 납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법이나 대통령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해 놔야 된다. 너무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대로 정책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더 추가적인 의견 없으시지요?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위원님.

○이만희 위원 기본적으로 이 관련법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태양광의 설치를 제어하시겠다는 것인지, 직접적인 목적은 어느 쪽이 더 큼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 영농형 태양광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한 10여 년 정도 됩니다. 10여 년 되는데, 현재 24년 말 기준으로 약 1만 6000ha의 농지가 태양광으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농업생산 기반의 유지도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더더구나 농촌에 태양광을 유지하면서 그 소득의 상당 부분은 외부로 나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 농촌 주민에게는 이 태양광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 생산도 유지하면서 그 발전 수익은 농촌 주민, 농업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것이 이 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좀 규모 있게, 질서정연하게 이게 가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농민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는 말씀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준비하신 여러 가지 실증 과정을 통해 가지고…… 농업 생산은 최대 한 20% 정도까지 감소하지만 늘어나는 소득은 어느 정도로 늘어납니까, 농사만 지었을 때에 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 실증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실증된 농지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연구용역했던 자료를 보니까 기존 작물 재배에 따른 순수익은 작물마다 좀 다릅니다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 쌀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익이 13.1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거의 10배, 13배 가까운 소득이 늘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 아마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든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 땅에다가 영농형 태양광을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 주지 않을 이유들이 없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같은 땅에서 13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는데 이것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수로 제어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전기를 팔아야 되니까 계통 문제가 있을 거고요. 계통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계가 있을 거고 모든……

○**이만희 위원** 그러면 계통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소지가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우려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로 개인이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한도를……

○**이만희 위원** 어느 정도 규모에 한도를 두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한 600평, 일부에서는 한 900평 정도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러면 아

까.....

○이만희 위원 농지의 크기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한 농가·농업인당 면적입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 땅이 더 있어도 할 수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농지를 얼마 가지고 있는 간에 자기 소유 농지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영농형 태양광은 600평 내지는 900평이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시다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건 어쨌든 간에 저걸 줄이는, 한쪽에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규모 있게, 질서정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생에너지지구를 도입해서 일부 지역에는 집단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만희 위원 재생에너지지구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은 최소한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ha 정도 저희들이 현재.....

○이만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기본적으로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불허,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라도 지구 지정이 된 경우에는 가능,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리고 옆에 보면 발전사업자 중에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시·군·구가 아니라, 거기 플러스해서 연결한 시·군·구를 같이 포함을 해 놔잖아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농지 소재지하고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태양광.....

○이만희 위원 연결했다는 것은 태양광이 있는 장소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시·군·구를 얘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거기다 그렇게 특혜를 더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를 든다면 A군에 있는 농업인께서 B군 소재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소재지는 B군에 있는데 실제로 사시는 A군에 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일정 부분 약간 경관이 아름답지 못하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 살지 않으면서 혜택만 보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그걸 조금 유연성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만희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연접, 옆에 붙어 있는 시·군·구에 사는 사람한테만 그런 특혜를 주고, 그러면 거기하고 조금 떨어져서 사는 시·군·구 사람들은 그런 특혜를 안 받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말씀……

○이만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조금,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타당하게 딱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적어 보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주민동의, 주민동의 부분도 아까 임미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의 의견수렴’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법 조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발전설비가 소재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이런 동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지요? 그냥 물어보는 걸로 오케이, 이 말 아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여기의 의견수렴 절차는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거주한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대성리에 저거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읍·면·동 같으면 대성동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대성리에서 햇빛소득마을을 하는 경우에는 대성리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접해서 대규모의 농업진흥지역이 있다, 거기에서 한 5~10ha 정도의 재생에너지지구에 태양광을 한다면 그 인근 마을까지도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진흥구역일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비진흥구역에 개인이 600~900평 규모 정도로 영농형 태양광을 할 때 주민동의 절차를 개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실제로 농민이 갖는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영농형 태양광은 주민동의 절차를 좀 다르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예.

○전종덕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 윤준병 예.

○전종덕 위원 5조 있잖아요. 27페이지, 무분별한 발전사업 이런 등등의 이유로 최소한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발전허가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청년농 우대를 위한 조건으로 삭제를 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저는 이 조항을 삭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단서 조항이나 예외 조항으로 청년농을 명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굳이 전체를 다 들어내 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수정하시면 안 됩니까?

그래도 3년이라는 그 규정을 뒀던 것이, 농식품부에서도 이것 굉장히 규제를 둔 것으로 계속하셨었잖아요. 그런데 3년 조항을 삭제를 해 버려 가지고 이것을 좀 변경, 청년농

때문에 그런 거라면 청년농은 예외나 단서 조항으로 두고 3년 조항을 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저는 임차농 문제, 임차인 보호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데요. 임차농 보호를 위해서 수정의견을 144쪽에다가 담았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표준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제8조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가 조항이 있고 42조에서 허가를 받은 때에 보호 및 발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임차인 보호를 담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째는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차인의 경우에 임대인의 동의 절차가 허가 절차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단계에서 막힐 것 같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절차를, 여기에 주민 의견수렴 절차는 거치는 게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정작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런저런 보호 조항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발전사업 자체에 참여를 못 해. 왜?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 준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47%에 달하는 대한민국에서 실제 경작하고 계신 임차인들이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아니라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 줘 버린단 말이지요. 이런 경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빠져 있다 하는 지적을 첫째 드리고요.

두 번째, 임차인 보호 조항 중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42조 3항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42조 3항의 표준계약서 작성·보급·활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괄적으로 어떤 문제가, 어떤 갈등이 현장에서 생길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게 심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임차인 보호 및 발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표준계약서는 3항 1호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계약서라고 하는 작은 용기인데 거기다가 이것저것 담아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문제들이, 갈등이 빚어질 수 있고 임차인 보호에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표준계약서 작성·보급·활용을 3항 1호에 넣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3항에다가 담아 가지고 용기를 좀 바꾸자는 거지요. 큰 그릇을 먼저 만든 다음에 표준계약서를 호에다 담아서 그 밖의 갈등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영으로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 답변을 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질문이 있어서.

○소위원장 윤준병 예, 답변해 주시지요.

○전종덕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3년 조항 삭제하지 않는 것.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3년 조항은 저희들이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제가 볼 때는 전종덕 위원님…… 3년, 당초에 있던 것을 하

고 청년 우대하겠다 하는 내용을 단서로 다는 것도 괜찮은 입법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또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 3항으로 기본적인 방향 제시하고 1호에서 표준계약서와 관련된 내용을 입법화하자는 취지의 지적도 옳다고 봐요. 그것 크게 문제 안 돼서 그 부분은 수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이만희 위원** 잠깐만요. 임차인이 저걸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개인의 자산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형태가 있을 겁니다. 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걸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을 강제할 경우는 없을 것 같고요. 임차인이 한 번 설치하면 20년 이상 영농형 태양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재산권의 침해를 상당히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동의는 안 해 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수 사례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경우…… 예를 든다면 그동안 임차료를 평당 한 3000원 정도에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께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임대인이 ‘그러면 임대료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한 6000원 정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임차인께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하시면 추가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장기 임대차를 맺고 영농형 태양광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차관님, 지금 지적한 내용은, 금액적인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합의야 하겠지요. 임대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임차를 받아 가지고 임차인이 태양광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당초 임대해 줄 때 임대차 계약의 요건에 지금 하고 있는 태양광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안 들어 있으면 그거는 원래 계약 내용의 변경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못 하지요, 원래 일반적인 사계약에서는. 그러니까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당초 임대차 계약할 때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된 내용을 허용을 안 했는데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장기간을, 20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해서 태양광을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안 되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그 내용은 사법적인 임대차 계약 속에서 정해져야 될 내용이고 그 내용이 전제가 돼서 임차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을 해서 장기간 하는데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도 갱신, 연장할 수 있도록 의무화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계약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 내용을 태양광 속에 지금 넣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사전에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만의 독단적인 의사를 가지고 영농형 태양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기다 굳이 임대인의 동의가 이렇다 하는 내용을 넣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설정돼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을 잘 설명을 드려야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임호선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것 이렇게 두리몽실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이…… 기이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경우에 증액 청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을 예컨대 당사자인 사인 간의 계약에 맡긴다라고 하면 임차인이 영농형 태양광에 참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자칫 임차인 보호에 중대한 허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실제 경작자의 47%가 임차인인 대한민국 농업 현실에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지는 거지요. 임대인이 누가 그거를 20년간 동의를 그렇게 해 주겠습니까. 그걸 단순히 사인 간에 맡긴다라고 하는 문제를 여기서 논의 없이 그냥 법으로 통과시키기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치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임차인은 현재 농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차를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을 하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이 달라지는 겁니다. 임대와 임차의 조건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수 사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을 했을 때는 평당 임차료가 예를 들어 한 이삼천 원 했지만 수익이 달라지면 임대 조건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시물레이션해 보면서 안내를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 윤준병 잠깐만, 문금주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문금주 위원 차관님, 저는 조항 하나하나 한 것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렇고. 제일 궁금한 것, 이 법이 통과돼서 그게 마을형이 됐든 기업형이 됐든 개인이 하는 거든 전력 계통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바로 가능한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현재 문제는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부 조금 가능한 부분이 있고 호남의 경우에는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후부하고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대안으로서 우선적으로 ESS 장치에 대해서는 좀 더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건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러면 수익 구조가 달라져 버릴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것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문금주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기대만 잔뜩 크게 해 놓고 현장에서 진행이 안 돼 버리면, 전력계통 문제로 또 수익성의 문제로 진행이 안 될 경우 오히려 더 실망감만 커질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그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기후부하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햇빛소득마을의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계통망

을 연결하도록 노력한다는 게 현재 논의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문금주 위원 그 정도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진척이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직 구체적으로는 기후부하고 어디까지 진행된다는 말씀은 좀 어렵지만 기본적인 방향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합의를 했습니다.

○문금주 위원 어찌 됐든 지역에서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계통에 문제없이 바로바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저는 더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께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행안부, 기후부, 농식품부가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 추진단에서의 주요한 안건, 논의 과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문금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생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 다 버리고 있잖아요, 계통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무조건 이렇게 생산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ESS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관…… 이런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이거 생산만 해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더 많은 고민과 예산 투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농식품부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발전이라든지 허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지점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임차인 보호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로 발전사업자 허가를 냈을 경우에 발전사업자 실명제 이런 것들이 지금 운영되는 거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임차를 안 해 주고 지주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요. 그런데 이분이 사인 간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인 간에 이걸 다른 분에게 임차를 해 줘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이걸 악용 사례로 보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제일 확실하게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신고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신고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그동안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럴 텐데 이게 굉장히 악용될 소지가 많을 것 같다 이런 지점이 걱정되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받고 자식이 발전사업 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제가 표현을 실명제라고 했는데 실제로 허가자가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감시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차인 보호와 함께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게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고, 법에도 그런 취지로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아까 말씀드린 임차인·임대인 관계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처럼 시작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영농형 태양광을 위해서 읍·면·동 주변 분들의 동의까지도 다 받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임대인에 대한 동의도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명쾌하게, 당연히 그럴 것이라라는 걸 넘어서서 확실하게 저걸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3000원에서 6000원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이 13배 가까이 아니면 평균 10배 가까이 더 나온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임대인의 입장에서 그 정도 받고 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제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라는 것의 가장 큰 약점이 뭘니까? 간헐성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태양광 설치를 많이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설치하는 태양광의 운용 시간이 하루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실은 설치된 모든 태양광의 어떤 전력계통망을 설치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경제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맥시멈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력계통을 설치를 하면 나머지 시간들은 또 비는 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ESS 설치 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좀 더 과감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 아니면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만들어진 사항이 실질적으로 농지 매매처럼 매매도 가능한 거 아닌가. 지금은 매매 안 된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본인이 농업을……

○이만희 위원 농업인이 예를 들어 자기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나중에 이 농지를 설치한 사람이, 농지 소유자가 매매하고 싶은데 매매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입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승계 가능합니다. 그 조건을 유지……

○이만희 위원 아니, 매매가 가능하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가능합니다.

○이만희 위원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이만희 위원 농지 매매처럼 가능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조건 그대로 승계하면 가능합니다.

○이만희 위원 내가 잘못 이해했네요. 그래요. 하여튼 내가 말씀드린 그 몇 가지 사항을 더 염두에 두시고 법률안에도 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계통 문제 위원님들 우려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히 전제조건이니까, 예전에도 우리 소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사실은 계통과 관련된 내용을 일반 태양광보다 좀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전기사업법에는 태양광의 경우 이렇게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은 순서대로 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는 게 햇빛소득마을과 관련된 내용을 전기사업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의 영역을 좀 넓혀서 영농형 태양광도 그 범주에 좀 넣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입법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지적하셨던 임대인과 관련된 동의 이 내용은 일부 지금 들어 있기는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발전사업 허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건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8조에 보면, 41페이지에 일부 들어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보면 18조 1항 4호에 농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행위를 못 하도록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임대인 동의와 관련된 절차 이런 내용들이 전제가 돼 있다 하는 점도 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기와 관련된 내용도 8조 3항 4호 보면 허가받으면서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사전적인 조건을 두어서 그런 내용들이 입법적으로는 담겨 있는데 다만 외부 환경을 잘 만들어서 이 요건에 충족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지적이고 그런 요구이니만큼 농식품부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영농형 태양광 입법이 되면 실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논의를 마치고요.

○**이만희 위원** 아니, 18조 4호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소위원장 윤준병** 어떤 거요?

○**이만희 위원** 18조 4호에 규정된 거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소위원장 윤준병** 임대인 동의?

○**임호선 위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이만희 위원** 여기 보면 농지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를 했을 때 그 지점을 얘기하셨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동의라고 하는 내용은 그 전에 허가를 받을 때도 사실은 임대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만희 위원** 그걸 법률에서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하자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임대인의 동의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제조건을 1·2·3·4·5 내용에 하나 넣어서 임대인의 동의가 좀 명시적으로 수반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 넣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아니, 42쪽 제가 말씀드린 거 수용하셨는데 표준계약서 작성·보급·활용 문제가 아니라 ‘임차인 보호 및 발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구체적인……

○소위원장 윤준병 표준계약서 이 내용을 3항으로 넣고……

○임호선 위원 그 내용을 3항 1호, 호에다가 뺏자 이거지요.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좀 더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게끔……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아까 그렇게 하기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7항까지……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아마 시행령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시행령에 대한 보고를 저희가 이후에 소위에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령 준비되면 시행령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393)

14.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1005)

15.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00)

1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7107)

17.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5855)

(11시10분)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내용도 예전 소위에서 검토된 내용이니만큼 조정된 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13항부터 16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들도 지난번 소위에서 심사를 하셔서 가지고 참석하신 위원님들 간에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내용으로서, 먼저 소위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 잠정 심사 결과입니다. 연번별로 잠정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 농촌지역의 광역시 자치구에 동을 포함하는 내용은 일부 자구를 수정해서 수용을 하였고, 연번 2번도 동 지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적 기본계획 수립 권한 부여하는 것도 여기에다가 관할 시·도가 농촌공간정책심의회를 재량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수정해서 수용을 하였고요.

연번 3번의 농촌위해시설의 범위에 대해서는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까지 확장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서 이 내용은 삭제를 하였고, 연번 4번의 내용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5번에는 협의대상을 농식품부장관과 기후부장관으로 명확히 해서 수용을 하였고, 연번 6번에 관해서는 지구의 명칭을 농촌경관지구로 수정을 해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7번과 8번의 내용은 일부 자구를 정리해서 수용을 하였고, 연번 9번·10번·11번·12번은 원안대로 그냥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연번 13번의 특별재난지역 우선지원 규정에 관한 거는 수용을 안 하시기로 했고, 연번 14번의 농촌특화지구계획 신설에 관해서는 수용을 하시되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추가를 해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연번 15번의 부수 조항 개정이나 의견 제시 기한 단축 같은 거는 원안대로 수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연번 17번의 시행계획 및 농촌특화지구계획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의제 조항은 일부 내용을 수정을 해서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8번의 농촌협약에 대해서는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해약 사유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용을 하였고, 19번은 원안대로 수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20번의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소위 자료의 88페이지부터는 이러한 심사 결과를 반영한 대안의 조문을 반영을 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죄송합니다. 84페이지에 새로 상정된 안이 있어 가지고 그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84페이지의 20번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업무 범위 확대에 관한 이만희 의원님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의 사업 내용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공동체 역량강화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일부 모호한 문구를 구체화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번부터 19번까지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20번 또한 수석전문위원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소위 잠정 내용 열세 번째의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우선지원을 제외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취지를 살리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따져 보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이 108개 시·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차별성을 뒤서, 대부분의 읍·면이 포함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이만희 위원** 제가 여기서 특별재난지역의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얘기는, 이 법안 자체가 기존에 있는 농촌공간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변화시키는 재구조화 또 여러 가지 재생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있는 사항들, 현상을 변경시켜 나가는 것인데 산불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연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변경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기왕에 여기를 복구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국가의 지원이나 행정적 절차를 좀 더 간소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이 특별재난구역이라는 것을 넣었는데 정부 측에서는 특별재난구역이 해제가 안 되니까, 언제 종료가 됐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21년도부터…… 그 전에는 해제했습니까, 21년도 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없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면 그 전의 것은 왜 얘기 안 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최근 자료를 취합하다 보니까……

○**이만희 위원** 5년 것 해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 전의 자료가 없었습니까? 아마 전국적으로 다 해당되지 않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런데 그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특별재난구역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그렇다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될 만큼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발생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기한에 제한을 둔다든지. 또 재난의 종류도 여러 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와서 한해 같은 경우에, 가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현상 변경은 없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현상의 변경이 많이 있고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재구조화 사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을 뒤서라도 이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없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취지를 고려한다면,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따져 보니까 108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농촌공간계획이 91개 정도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러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 취지를 살린다면 우선지원 대상을 한정하는

조치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만희 위원** 제 의견은 기본적으로 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지역은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 대상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답변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예전에 우리 검토할 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셨던 내용이 61쪽의 검토의견에 보면, ‘총괄적으로 재난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이만희 위원님 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한다. 그 취지는 충분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고, ‘다만 특별재난지역이 광범위한 지역에 선포되어서 피해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우선지원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선포 이후에 해제 절차가 없어 가지고 계속 누적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 내용까지는 차후에 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잘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만희 위원님, 그것은 예전에 논의했던 내용이고, 그런 내용으로 논의가 됐었던 내용 아니까요. 그 내용 한번……

○**이만희 위원**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가 광범위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동까지도 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동으로도 지정될 수 있고 군 단위 전체를 묶을 수도 있고……

○**이만희 위원** 물론이지요, 재난의 규모에 따라서.

○**소위원장 윤준병** 또 내용에 따라서 지역 전체를 하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랬던 내용인데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 그것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임호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선교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임호선 위원** 지난번에 이것 조문 검토할 때 제가 반대의견을 드렸는데 특별재난지역 우선지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저희도 증평·진천·음성 다 특별재난지역으로 거의 격년 단위로 지정을 받다시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선지원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까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그것이 개선 복구냐 아니면 원상 복구냐, 어떤 회복 개념으로 재난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정책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농촌 재구조화·재생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의 목표 자체가 다르고.

그리고 그런 재난지역에 우선지원된다고 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이 공모절차를 통해서 대상지역이 선정되다 보면 순서가 오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되어야 될 이 법의 취지나 목적 자체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라고 하는데 완전히 선후가 뒤바뀔 수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가 여기서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이 법을 통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지역 선정이라든지 정책목표라든지 효과 같은 부분이 완전히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저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

원은 전적으로 행안부 그 법에 맡기고 순수하게 농업·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정책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우선지원 조항이 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에 우려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만희 위원 제가……

○소위원장 윤준병 이것 논의를 하고 김선교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선교 위원 하세요. 먼저 해요.

○이만희 위원 임호선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의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별재난지역에 있어 가지고 정부 측의 지원이라는 것이 주로 공공시설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그런 차원의 복구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개별적으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구 지원이 그대로 그렇게 많이 가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특별재난구역 지정에 따라서는 어디까지나 항구적이고 새로운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걸 주장하면서도 현재까지 실상은 임시적인 면에 그치고 있다는 면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안을 제시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평상시의 농촌공간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 가지고 재구조화해 만들어 가는데 재난을 당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이 안을 제안했었습니다.

사실은 임호선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재난구역 지정하고 농촌의 재구조화가 사업의 목적이거나 목표가 엄연히 다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거기에 다 그냥 묶여 가는 그런 감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제 의견들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북에 산불 같은 게 발생했잖아요. 그런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 재구조화 사업들은 이왕에 재구조화를 해야 되니까, 복구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복구 비용과 농촌의 이런 재구조화 비용이 더 합쳐지고 이것이 좀 더 전문성을 띠었다면 더 잘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의견을 제시해서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임호선 위원님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은 저 지적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호선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은 양해해 주시는 거지요?

○이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논의할 때 우리가 좀 더 가지고 한번……

○소위원장 윤준병 예.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이만희 의원님 안으로 발의된 것이 수용되기가 좀 어렵다면,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도 어렵다면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은 어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들께서 취지를……

○김선교 위원 여기에 담기 어려우니까 부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동의해 주신다면 농식품부장관

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선지원 대상이 필요한 지역의 기준이라든가 기간 이런 것도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위원님들 우려사항을 좀 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요.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계속 저쪽에서만……

○**임호선 위원** 하세요. 죄송합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하고 가까워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그거 막 해도 돼?

(웃음소리)

○**문금주 위원** 두 분의 의견이 지역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다 타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법에서 이걸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보다는 공모 과정이랄지 추진하는 절차, 과정 속에서 이런 지역들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지 이걸 굳이 법령 거기에 넣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충분히 이러한 부분들은, 재난지역들에 대해서는 정무적 판단으로 우선 고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에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님.

○**서삼석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명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약칭을 제가 알기로는 광주특별시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광주통합특별시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문금주 위원** 지적이 다 맞습니다.

○**서삼석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확인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제15항부터 1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39)

(11시29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이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도 지난번 심사를 하다 잠정 결론을 내리신 거고 내용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이력번호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둘 다 동일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 중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상향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소위에서는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수용하시되 일부 조문과 부칙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

1페이지에 붙어 있는 조문 자료의 잠정 심사 결과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호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결하시기 전에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고 정부 측에도 촉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임호선 위원 제가 한 4일 전인가 염소 축산을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여기 이력제 단속도 강화를 하고 또 처벌도 강화하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다만 지금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산양이 염소로 둔갑을 해서 국내에서 염소 하시는 분들이 생계에 중차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거짓표시 등의 금지에 따른 벌칙 강화와 함께 정부 측에 염소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또 이력제가 지금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산양이 수입됐으면 산양으로 최종 소비자들까지 표기가 돼야 되는데 ‘국내산 플러스 외국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국내 염소업계가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의결하시기 전에 촉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농식품부, 지금 임호선 위원님 말씀 주신 흑염소 등을 포함해 정부가 작금의 식생활 문화를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변화하면서 수요가 좀 있고 늘어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장 자체가 왜곡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실상 그다음에 대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세부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일정 제18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금주 위원 차관님,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계속 검토하겠다는 하시고 지금 답이 안 오는데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하여튼 다음 정조위 때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흑염소 관련한 이력제 부분이랄지 수입산 규제, 쿼터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

고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염소산업 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요.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원산지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쿼터 부분을 생산자들께서는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신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른 방법으로 국내 품종을 개량한다든가 원산지표시법을 어떻게 할 건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 세부적인 내용 잘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왜 어려움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8)

20.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8)

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1)

22.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95)

(11시35분)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2항까지 4건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의사일정 19항부터 제22항까지 이 4건의 법률안도 지난번에 심사를 하셔서 참석하신 위원님들 간에 잠정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소위 잠정 심사 결과입니다.

연번 1번의 쌀 소비촉진 사항의 기본계획 포함에 관련해서 원래 윤준병 의원님 안은 쌀만 포함이 돼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쌀, 보리, 밀 등 다른 농산물까지 계획에 포함되도록 수정을 해서 수용을 하셨고요.

연번 2번의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한 전통주 등 제조 소기업 지원 근거는 이런저런 통상분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반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번 3번의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도입은 일부 조항이나 체계·자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서 반영을 하였고, 연번 4번의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이라든지 연번 5번의 지역특산주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12쪽의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일본 사케의 경우는 이런 진흥원 관련된 유사한 기관이 설립된 지 100년이 넘었고요. 프랑스 와인 같은 경우에는 200년이 넘은 걸로 지난번 저희가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한 데에서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통주가 한류와 상당히 연동, 맞물려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층에까지 전통주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현황을 감안할 때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을 하루라도 미룰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법 개정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야말로 매우 비중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다뤄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관계부처와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전통주산업 진흥을 위한 담당이 어디입니까,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건 농식품부 내의 조직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임호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K-푸드, 한류 열풍 등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김선교 위원** 글썄,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아주 신속·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김선교 위원님 말씀 주신 뜻은 아마 농식품부는 동의하는데 타 부처에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수용을 못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다시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번에는……

○**임호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전통주가 이번 경주엑스포에서도 공식 만찬주인가로 다뤄졌고 제가 그것을 직접 시음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무슨 행사 때마다 이벤트로 다뤄져야 될 사안이 아니고요.

지금 아마 존경하는 위원님들 각 읍면에도 읍면마다 특색 있는 막걸리를 비롯해서 전통주가 다 소중하게 다뤄지고 있을 겁니다. 특히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같은 경우에도 전통주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통주산업 진흥을 n분의 1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말 존경하는 김선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푸드의 중심으로 앓힐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해서는 전통주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그렇게 영세하게만 계속 둘 문제는 아니다. 이번 기회에 뭔가 획기적인 안으로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사를 피력하는 바입니다.

○임미애 위원 이 법안은 보류를 좀 해 두시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이 건은 보류하고?

○임미애 위원 예, 지금 기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더 협의를 해 보겠다고 하니 보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안건은 보류하고.

○임호선 위원 이것 해야 돼요, 이번에. 꼭 해야 돼요.

○문금주 위원 그러면 설치는 하되 임호선 위원님 지역은 양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임호선 위원 예, 양보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다 안 할게요.

(웃음소리)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문제 제기한 내용은 계속심사하면서 촉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의사일정 제19항 및 20항, 제22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김선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김선교 위원 농지법부터는 2시부터 하시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이제 농지법 하려고 그러합니다.

○김선교 위원 그러니까 2시부터 하자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그러니까 2시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태양광과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같이 처리돼야 될 농지법안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 의결하고 식사하신 다음에 농지법 하시지요.

그 3개 안 설명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그러면 다시 영농형 태양광 관련해서 심사자료 1권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1권의 19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3건에 관한 내용으로서 대부분 앞에서 심사를 하신 영농형 태양광법에서 다 다루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하실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195페이지의 2번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농지사용에 대한 허가 종류 및 기간에 대해서는 앞서 심사하신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에 관한 규정이 농지법 36조의 개정

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것만 아까 말씀드린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에 3건의 법률안을 199페이지의 수정의견과 같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6조 이 사항만 같이 대안으로 의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의 영농형 태양광 내용에서 나머지 내용들은 다 포함이 됐고요. 영농형 태양광법의 일시사용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농지법 36조도 같이 바뀌 줄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것만 의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영농형 태양광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농지법을 통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려고 했는데 영농형 태양광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필요가 없고. 대신에 농지법에서 영농형 태양광하고 관련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에 관련해서 그 근거를 넣고자 한다 이런 취지의 입법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위원장님, 지금 의결할 게 아니라 농지법하고 같이 의결을 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오후에 보고 해야 된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예.

○소위원장 윤준병 알겠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준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2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2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2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28)
2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4)
2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8)
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0)
3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9)
3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0)
3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3)
3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17)
3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3)
3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3)
3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64)
3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8)
3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9)
3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2)

4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3)
4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6)
4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1)
4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1)
4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7)
4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31)
4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8)
4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4)
4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9)
4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970)
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34)
5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46)
5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30)
5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3)
5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85)
5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22)
5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46)
5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69)
58.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0)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58항까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58항까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5건과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1건 등 36건입니다.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위 자료를 두 권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위 자료 5권은 농지 규제 완화 및 절차 보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34건의 농지법 개정안에 대한 소위 자료이고, 두 번째 소위 자료 6권은 농지 조사에 관한 법률안 2건을 한 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34건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자료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34건의 개정안은 내용상 25개의 개정사항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5개 개정사항은 표의 분류를 보시면 주제에 따라서 몇 개의 카테고리 분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주제별 분류에 따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의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1번부터 3번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에 관한 개정안은 모두 8건

의 의원 발의안에서 제안된 내용입니다.

이들 법률안들은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통적인 사항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종배·송석준·여기구·신성범 의원님 안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이런 목적이 있는 경우 농지 소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고, 이만희 의원님 안은 인구감소지역만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덕흠·서범수 의원안은 농지 관리 계획 등에 따라 지정한 특정 지구만 허용하자는 것이고 배준영 의원안은 접경지역만 허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울러 배준영 의원안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을 현행 1000㎡에서 2000㎡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들은 규제 완화를 통해 농지 거래 활성화와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 촉진 효과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내에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할 경우 우량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또 2021년 LH 사태로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규제가 강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제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배준영 의원님 안과 같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을 확대하는 것은 현행 1000㎡가 농업인의 판단 기준이 되는 농지 규모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2페이지의 2번 주말·체험영농계획 작성 항목 간소화에 관한 개정안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주말·체험영농계획서 기재사항에서 노동력 및 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을 제외하는 것으로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의 3번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배제 등에 관한 4건의 개정안은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제를 일부 토지에 대해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중 16페이지의 검토의견 1번에서 보시듯이 박덕흠 의원안과 같이 농업경영계획서 등 첨부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서류 없이 농지취득자격을 심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일응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검토의견 2번에서 보시듯이 1000㎡ 이하의 소규모 농지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소규모 농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것은 농지에 대한 투기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7페이지의 검토의견 3번에서 보시듯이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사유로 농지위원회 설치 대상에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역시 농지위원회 심의가 투기 의심 대상군만 선택적으로 거치는 취득 절차라는 것을 감안할 때 투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리 공백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4쪽의 1번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은 저희들이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 이용 효율, 농업진흥지역 지정 취소 등을 볼 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은 농업진흥지역 외로 한정하

는 것이 현재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농업인단체 등에서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와 농지 세분화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의 2번 주말·체험영농계획 작성 항목 간소화 부분입니다. 일부 부담 완화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지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결론 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 배제 등 조항이 되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에 대한 행정 비용 등의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 파악한 후에 의견을 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덕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예.

○전종덕 위원 제가 조금 늦게 와 가지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개별 심사를 하게 되면 하나하나 다 토론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좀 효율적 토론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도 이것 방금 이 자리에서 봤는데 정부에서 제출하신 것 같아요, ‘농지법 개정 추이 및 제안 사항’. 그래서 얼핏 살펴보니 제안 사항에 농지 관련한 조사를 하고 있으니 조사 이후에 이런 것들을 논의하자라는 취지로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종합 토론을 한 후에 방향을 정하고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아직 이걸 일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오히려 조문을 하나하나 본 이후에 존경하는 전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것 하는데 지금 나올 수 있는 답이 뻔할 것 같아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문금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금주 위원 전종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한 번 하기로 한 만큼 오늘 전체적으로 일회독을 해 보고요. 정부 측 의견 또 전종덕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렇게 하시지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축조심의까지는 안 되더라도 분야별로, 지금 36건인가요?

○임호선 위원 34건……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일단 36건의 법률안이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포함해서 개별적인 내용 보고받고 의견 듣고 여기서 결정이 안 되더라도 한 번 쪽 스킴(skim)하는

과정은 거쳐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시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이해되시지요?

○전종덕 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위원장 윤준병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종덕 위원 사실 농식품부에서 답변할 내용이 거의 비슷하실 것 같아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농식품부에서 ‘농지법 개정 추이 및 제안 사항’ 이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36건에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34건에 해당되는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면 심의는 할 건데 진행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해 주세요.

이 내용 설명하려고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김선교 위원 이것 한 번 먼저 하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설명을 먼저 한 번 듣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유인물 3페이지짜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도 농지법 시행 이후에 농지 취득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개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악용해서 도시민들의 시세차익 실현을 위한 농지 매입, 농업법인의 부동산 영업 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로 현재 대두된 바가 있고요. 농지 취득 심사와 사후관리 체계의 취약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년 3월의 LH 직원 투기를 계기로 농지 불법 투기 등을 막기 위해 농지법과 하위법이 21년 8월부터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를 체계화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은 제한하였고 농지 취득 시 직업 등을 기재하였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의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또는 농지은행에 위탁·임대가 가능한 농지의 최소 소유 기간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불법 취득농지 신속 처분 절차를 도입하였고 실태조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매년 1회 이상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체적인 농지 현황입니다.

25년 기준의 경지 면적은 약 150만 ha입니다. 국토 면적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경지·시설물 설치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농지 면적은 195만 4000ha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경지 면적은 32만 4000ha가 감소하였고 매년 연평균 감소율은 1% 수준입니다.

25년 실거래가는 평당 17만 7000원으로 21년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는 전남지역 대비 7.4배 수준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생활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과도하게 높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21년 이후에 부동산 경기침체 및 금리 인상과 더불어 농지 취득 절차 강화 등으로 현

재 농지 거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량농지는 보전하면서 투기 근절과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지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의견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여러 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쟁점을 정리해 보면 고령농·농지 소유자 중심의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입장과 청년농·임차농을 중심으로 현 제도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농지 면적 보전 입장과 농촌지역 활력 제고 입장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주신 개정안별 주요 쟁점에 대해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체험농장입니다. 현재는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만 취득이 가능하고 소유가 허용됩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플러스 농업진흥지역 외에서도 제한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상속농지의 경우 현재 1ha까지만 개인 간 임대 가능하고 초과는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됩니다. 개정안은 전량 농지은행에 위탁을 의무화하고 계획적으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고령 재촌지주나 3년간 보유 시 농지은행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 소유 후 자율적으로 임대차를 허용하는 안도 나와 있고 주말·체험, 농지은행 임대를 위한 보유기간 3년을 임대를 위한 농지 보유기간 1년으로 단축하자는 개정안도 나와 있습니다.

타용도 일시사용과 관련해서는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염해간척지의 태양광 등 일시사용을 허용하자는 입장이 있고 이에 대해서 농산어촌 체험마을, 파크 골프장을 추가하자는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농지 전용과 관련해서는 우량농지 보전이 필요한 경우 농지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목적인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해서는 먼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시 농식품부장관 승인이 필요한데 장관 승인 절차를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고 용도지역 변경,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 시 진흥지역을 해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현행과 해제 사유를 추가하여 여건을 완화하자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농업인 편의시설, 소득원 개발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농촌 주민 편의시설과 가축판매시설을 설치하자는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농지 소유·임대차 등 쟁점이 큰 사안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장실태를 파악한 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인 농지의 소유와 이용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전수조사와 관련된 개정안을 우선 논의 과제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쟁점이 큰 개정안은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개편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농산어촌 체험시설, 농촌 주민 편의시설 관련된 개정안은 우선 논의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아까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규제 완화와 관련된 조문 부분하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우리가 지금 농지법을 개정하려는 취지가 결국 투기 세력을 대상으로 한, 투기 세력을 막고자 하는 농지법 개정이 사실상 농민들의 자산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농촌사회에 의도치 않은, 농지 거래가 거의 절벽이 되는 또 농지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자료 3페이지도 보면 1번부터 25번까지 나와 있는 대부분의 조항들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용을 좀 완화하자 또 농지 이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나와 있단 말이지요.

지금 어느 정도로까지 가 있냐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부실화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 거지요. 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같으신 분, 지난 2월 24일 날 국무회의에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문제를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울러서 무단 휴경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도 높게 비판도 하고 매각 명령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지시까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에 따라서 그 기준이나 영향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주변 농지들, 대표적으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투기의 대상이라든지 또 농지 자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지역구로 있는 영천이라든지 청도 같은 인구감소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기 목적의 농지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 뭐 하나도 없다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이라든지 귀농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지 가격이 대폭 더 떨어져야 된다 이런 인식을, 주장하시는 말씀도 있으십니다. 물론 청년 정책이나 귀농 정책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평생을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그것을 지켜 온 우리 농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대로, 그분들 가진 재산적 가치가 폭락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신가요?

또 한 가지, 지금 여러 가지 휴경 관련해 가지고도 말씀을…… 물론 농지를 보유하면서 고의적으로 무단 휴경을 한다든지 농지 목적에 맞게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고령화되고 또 동네별로 가 보면 사실은 농사짓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 구조적인 면도, 어쩔 수 없이 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요.

우리 농촌이 어떤 식이든 간에 규모화의 방향으로 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계화라든지 또 과학화를 위해서라도 이 자체가 좀 더 다른 방식, 공동영농이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논의 자체가 농지 전수조사,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마다 자치단체에서 해 오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농지 가격은 당연히 더 떨어져야 되고 농민들이 어떤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휴경조차도 인정되지 않고…… 투기 세력들을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놓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좀 차등화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시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지 가격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 정책을 실시하든지 이렇게 차등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년을 끌어오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 지가 벌써 2년째입니다. 이 논의 대상에 올라오는 것 자체가 거의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농지 전수조사 운운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논의는 뒤로 미뤄야 된다, 그 말씀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전향적인 자세에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주말·체험영농의 문제라든지 간소화 문제라든지 심의 배제, 임대 제한의 완화 이런 부분들도 저는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 결론도 내리고…… 이걸 해 나가는 건 해 나가는 것이고 또 농지 전수조사 해 가지고 만약에 어떤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저희들이 한 20만~22만 ha 정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일시에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농지 전수조사를 함으로써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지거래 허용, 그러니까 제한구역과 기타 지역은 아마 분명히 양상은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 또한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농지제도 관련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특정 지역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1개 시·군을 샘플링해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실제로 주말·체험영농으로 구입한 농지의 실태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 어떤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주말·체험농장으로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어떤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인데 보니까 주말·체험농장을 실제로 하지 않고 인근 농업인이 그냥 하는 그런 실태도 있고 형태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휴경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그것 또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지 규모화·기계화에 대한 공동영농 방식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내년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전종덕 위원님 하시고 임호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농식품부가 농지 운영과 관련한 정확한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현실에서 나타난 문제도 있지요. 실제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 간의 가격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편차라든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농지의 제

1의 목적이 됩니까? 식량생산기지가 농지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식량안보 차원에서 식량자급률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 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150만 ha 아닙니까, 농식품부가 밝히는? 그런데 지금 150만 ha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50만 ha를 그대로 농지로 해서 농산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지금 기후위 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세우고 있는 식량자급률이냐 이런 것들을 채운다는 보장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오히려 식량안보를 위해서 더 유지하고 다른 데로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지의 목적은 우리 국민의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기지가, 그리고 식량안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가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기본 철학을 가지고 경자유전 원칙대로 농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농식품부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휴경지 시설물이, 여기서 생산물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를 195만 ha로 분석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말·체험농장이나 이런 걸로 많이 완화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전에 영농형 태양광도 농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농지는 계속 축소될 수밖에 없고,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가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면서 실제로 농사는 안 짓고 있지만 농지로 분류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에는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기본 철학에 기초해서,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니까 전수조사 제대로 하셔서 가지고 전수조사에 기초해서…… 아마 지금 전수조사 하시면 활용할 수 있는 농지들이 진흥지구 말고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도 농지로 분류되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여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기본 철학과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 농민들의 재산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 이후에 모색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는 무조건 개별 토론회…… 이것 필요하니까 이것 하자, 이것 필요하니까 이것 하자 이렇게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 산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체계적인 계획하에 논의가 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댓글을 한 몇백 개는 본 것 같아요. 농지 조사 부분에 대한 현장의 여론이 어떤가 싶어 가지고 쪽 봤는데 거기에 좀 아차 싶었던 지점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있잖아요, 24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그렇지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거기 댓글 중에 ‘내가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려고 해도 매수자가 나타나지를 않아서 농지은행에다가 이거를 의뢰를 했는데 순번이 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이 있어요.

결국 예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4년도, 25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아마 예산이 감액돼 있었을 거예요.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그 예산이 바랍직했다면 이번 추경에라도 조금 더…… 그런데 그걸 왜 못 담았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실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수요를. 그런데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어차피 매도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공급은 있는데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매수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추경예산에 일정 부분 담으면서 그거를 좀 담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맥락인데 은퇴형 농지연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도 고령화가…… 지금 아마 70 이상 되신 농업인이 전체의 34% 정도 될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통계로는 3분의 1이. 70 이상 되신 분들이 해마다 한 해 한 해 늘면서 결국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예를 들어 휴경지 같은 경우도 그분이 농사 의사를 갖고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예를 들어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로 갑자기 가시게 되거나 하는 경우가 저희 인근 동네만 해도 계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휴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 경우에 은퇴형 농지연금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에 막혀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수요들을, 사실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농지 전수조사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 작년에 미리 알고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사실 급하게 추진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예산도 담고 했는데 행정처리 비용만 담았지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예산에 담지 못했던 말이지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사가 끝나면 정확하게 실태가 파악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다가 그거를 다는 못 담을 거예요. 그러나 충분한 정도로는 담아냄으로써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이 정부하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하겠다는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호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농지 소유자 본인들이 경자유전이 안 돼서 농지를 매도하거나 사정이 있어서 매도하려고 할 때 매도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은행에서 전량 매입해 주지 않으면서 농정 당국이 농지를 관리한다 이런 내용은 자기모순일 수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예산 부족 문제가 있어서 대기자가 꽤 많았는데 그때 예산을 많이 늘려서, 1조 조금 넘는데 한 6000억인가 얼마인가 더 늘려 가지고 금년도에는 매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다 매수하는 수준까지 예산이 확보됐다 이렇게 내가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예산이 1조 8000억 정도였습니다. 작년 예산이 1조 1000억이었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한 육칠천억 늘린 거잖아요. 늘렸지만 지금도 현장에서 매도 의사가 있으면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전량 매입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것은. 더더구나 기금이잖아요, 매입 자금은.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견지하면서 농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 점은 임호선 위원님도 강조하셨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강조드리니까 그 부분은 꼭 전제로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내년 예산 할 때는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상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하면서도 어쨌든 지금 변화하는 농업의 현장이라든지 농촌의 현실을 우리가 반영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했던 농민들의 입장이 얼마나 많이 고령화됐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1년도 농지법 개정 당시에 책임 있는 사람은 농민들이 아니었어요. LH 직원들이 자기들 내부 정보를 가지고 관련된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을 해 가지고 판매하면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취득 자체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상속 농지, 아까 임호선 위원님이 47%인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농지의 절반 가까이가 상속 농지로 이루어지는데 그 후손들이, 그걸 상속을 받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려는 분도 있고 짓지 않으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짓지 않으려는 분들을 위해서는 농지 처분이, 매매를 활성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매매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면 그 사람들은 농지 자체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고령화된 농민들한테서, 가지고 있는 그 농지가 좀 더 자본과 기술을 갖춘 농업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업들이 농지를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열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묶어 놓고 그냥 투기의 대상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 농지, 3년이라는 것을 1년으로 좀 줄이자는 것은 임대차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런데 이것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는 과정에서 벌써 2년이란 시간이 더 흘러갔고 또 그사이에 현장에서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 있어서는 농지가 그분들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지금은 하시고 싶어도 못 해요, 매매 자체가 안 되니까. 이런 것에 대한 숨통도 좀 띄워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주말·체험농장을 해 가지고 농업소득이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은 고령화되고 침체된 농촌사회에 도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주말·체험영농에 관련된 부분들은 좀 풀고 거기에 관련된 농지위 심의 자체도 간소화하자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25개 사항들 자체가 대부분 농지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 거래 규제에 대한 완화를 주목적으로 나와 있는 법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두 다 무시하고 차관님께서 농지 전수조사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십니까? 필요한 것들은 하고, 전수조사는 전수조사대로 하시고 또 거기에 맞게 실태를 반영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께서 추구하시는 취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농업인단체에서는 반대의 의견도 지금 강하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현황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소유하고 이용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엄격하게 소유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용적인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면 공동영농 모델이라든가 다른 방식의 농업 모델들도 현재 나와야 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일부 농업인단체의 목소리만 중요하고 현장에서 직접 농민들을 상대하고 그 사람들의 건의 말씀을 듣고 법안을 제출하고 심의하고자 하는 위원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의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공감하시면 무슨 액션으로 나오셔야 되지 공감만 하고 그냥 다른 것은 안 한다고 그러시면……

○**소위원장 윤준병** 이렇게 진행하시지요.

일단 34건의 법률안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축조심의까지 다 하기는 어렵지만 분야별로 일단 법안 내용 확인하고 또 정부 측 의견 조율하고 이 과정은 최소한도 한 번 거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합시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그러면 다음으로 2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번부터 7번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외적 농지 소유 허용에 관한 개정안들인데요.

먼저 4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농지에 대한 예외적 취득 및 완화된 규제 적용에 관한 개정안은 인구감소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지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해당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 촉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조치들이 경자유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로서 정책의 일관성 면에서 지적이 있을 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 수용을 위해서는 이 법률안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해야 됐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을 의결할 때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의 5번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 등에 관한 개정안은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 목적 외에 치유농업 영위 목적의 농지 소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치유농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임대차를 허용하려는 것으로서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도 시설의 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없이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활용해서 치유농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치유농업에 대한 임대차의 허용은 농지 임대차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의 6번 종종 및 전통사찰의 농지 소유 허용에 관한 개정안은 등록된 종종과 전통사찰 중에서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명의신탁을 통해 사실상 소유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현실을 규범과 일치시켜서 이에 관련된 분쟁을 좀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종중에 대한 농지 소유 허용이 농지법상 농지 규제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현행 농지법 규제를 합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다는 점하고 또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현재도 실습농지 등으로 농지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의 7번 농업협동조합의 농지 소유 허용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이 국가 등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 농지 소유를 허용하되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의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협의 정책사업 추진을 원활화하고 또 농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농지 거래도 활성화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시 경자유전 원칙의 훼손과 소유와 경작의 분리가 고착화될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농지 가격이 상승될 경우 신규 진입농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21쪽의 4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농지의 예외적 취득 및 완화된 규제 적용은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설명과 같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자체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정리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의 5번 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 등입니다. 이 또한 수용이 어렵습니다. 치유농업법상 치유농업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세분화된 내용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의 6번 종중 및 전통사찰 농지에 대해서도 수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전통사찰의 지원 및 보존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문체부·국토부와 세무 범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의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설명 중 한번 들어 보시지요, 전체적으로 개관해서.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 43페이지의 8번부터 12번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 농지 임대차 예외사유 추가 및 최소 소유기간 단축 등에 관한 개정안은 농지 임대차 규제의 예외사유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농지를 포함하고 개인이 소유한 농지의 경우 농어촌공사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 임대를 허용하거나 고령 농업인 또는 이농자의 소유 상한 초과 농지에 대한 최소 농업경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임대차 규제 완화를 통해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지 활용을 확대하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차 규제의 완화가 투기적 농지 수요를 조장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또 박덕흠 의원안의 경우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이 입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45페이지에서 보시듯이 개정안의 농지 최소 소유기간 단축은 농어촌공사 위탁 임대 등의 의무 소유기간인 3년과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안을 내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개인 소유 농지의 사인 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및 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규제를 해 오고 있는 게 현행 농지제도의 기본적인 기초라는 점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9번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 대한 임대 시 농지 소유기간 제한 완화에 관한 개정안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 대한 임대를 할 경우에 농지 최소 소유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거나 소유기간 제한을 철폐하려는 것으로서 농지 임대 및 위탁의 활성화를 통해서 농지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역시 2023년에 농지법 개정으로 3년의 소유기간 제한 규제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도 있고 또 47페이지 하단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보시듯이 이러한 수탁제도가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8페이지의 10번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임대차 등 허용에 관한 개정안은 친환경농업 관련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농지의 임대 등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농지의 즉시 임대를 허용할 경우에 비농업인의 투기 목적 농지 보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앞서 말한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11번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임대업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의 전대 허용에 관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지금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조성 및 귀촌·귀농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현행 국유재산법에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와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상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폐지에 관한 개정안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또 이농한 사람이 농업경영 당시 소유했던 농지에 대해서는 현행 1만 m²의 소유 상한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서 농지가 지나치게 세분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이고 현재도 이런 상속 또는 이농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통해서 사실상 이런 상한의 제한 없이 농지 소유를 하고 있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역시 이러한 규제 완화가 경자유전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농지의 비농업적 활용이 있기 때문에 농지의 비농업적 활용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후

에 비교형량을 통해 그 필요성을 판단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43쪽의 8번 농지 임대차 예외사유 추가 및 최소 소유기간 단축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47쪽의 9번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 등에 대한 임대 시 농지 소유기간 제한 완화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48쪽,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임대차 등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 자경 원칙이라든가 임대차 신고제 등 관련 조항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62쪽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임대업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농지의 전대 허용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6쪽, 상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폐지에 대해서는 임의에 의원안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 하고 추후에……

○이만희 위원 한번 잠깐 물어볼게요, 지나가기 전에.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 대한 임대 시 농지 소유기간 제한 완화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47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주말·체험농장, 3년 이상 소유 농지에 대한 주말·체험영농자 임대 허용 법 개정과 시행이 23년 8월 달에 됐습니다. 지금 현재 3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본 연후에 규제 완화가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만희 위원 단순히 기간 자체가 많이 경과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의견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주말·체험농장을 하려고 했을 때 1년 만에 소유 농지를 허용할 경우에는 매입 후에 본인 스스로가, 사실 본인이 영농하겠다고 농지를 매입했는데 실제로 1년밖에 기간을 안 준다면 영농을 실제로 하지 않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의견도 좋으시지만 제가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전국의 농지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모든 규제가 같아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천만 하더라도 농지 3.3㎡당 500만 원짜리도 있고요, 단돈 5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몇백 km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자체를 각 시군별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똑같은 기준에 모든 걸 다 담아야 된다는 거는 조금 유연성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의견 없으시면 가능하면 설명 다 듣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또는 농지 전용 허가와 관련된 개정안들입니다.

13번부터 17번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의 13번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확대에 관한 개정안은 대규모 초기 시설 투자를 한 농업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시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예전과 같이 특정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농지를 전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7페이지의 14번 개정안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 치유농업시설 및 장애인용 편의시설 그리고 공공 파크골프장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먼저 78페이지에서 보시듯이 농산어촌 체험시설의 경우 이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시설 투자에 관한 농업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취지로서 시설 투자에 관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률의 명확성 요구 및 타용도 일시사용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허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기보다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치유농업시설 및 장애인용 편의시설의 경우 치유농업의 활성화와 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려는 취지로서 현행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타용도 일시사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과 치유농업시설의 범위가 좀 포괄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범위를 좀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공공 파크골프장의 경우 여가 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동 파크골프장이 농지의 단기간 사용을 전제로 하는 타용도 일시사용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15번 접경지역 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의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를 신고로 일원화하자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단기간 사용에 대해서는 신고로 또 장기간 사용은 허가로 구분하여 일시사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16번 농지전용허가 등 제한 사유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목적인 경우 예외 인정에 관한 개정안은 이러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목적인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 등에 대한 제한 사유에서 예외로 인정하자는 것으로서 탄소중립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탄소중립 이행 사업에 따른 편익 그리고 우량농지 보전에 따른 사회적 이익의 비교형량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소중립 이행 목적이라는 게 그 의미나 범위가 다소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87페이지의 17번 농지전용허가 특례의 인정에 관한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등이 고시한 농지에 대해서는 전용신고를 통해 농지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특례를 인정하자는 것으로서 특별재난지역 주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이나 농촌특화지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 35조에서 농어업인의 주택 등 농어업인의 생활·소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설은 전용신고제도를 통해 이미 절차를 간소화한 바가 있고 또 최근에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으로 해당 지구의 농지 전용허가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73쪽,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행령을 개정하여 양식장을 포함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에 대한 일시사용 기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임호선 의원님 안을 수용하여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치유농업시설 및 장애인용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같이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화한 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또한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로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접경지역 내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등 타용도 일시사용 절차 일원화 부분에 대해서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는 18년 5월 달에 단기간(6개월 이내) 농업생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입되었는데 장기간 일시사용까지 신고를 통해서 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등 제한 사유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등 목적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어렵습니다.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가 불명확하고 법령 해석 및 적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농지전용허가 특례의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을 지난 1월 29일 날 시행해서 일부 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특례를 적용받도록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다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다음은 9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번부터 끝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한 개정안들입니다.

18번 농지관리 기본방침 수립사항 및 절차 개선에 관한 개정안은 농지관리 기본방침에 농촌진흥지역의 해제 기준을 포함하고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기본방침에 따른 곡물자급률의 예측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본방침을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립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체로 그 취지나 내용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본방침에 곡물자급률 또는 곡물생산량 예측을 포함하는 것은 현재 이러한 생산량이나 자급률 전망을 기초로 농지 목표 면적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선후관계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본방침에 따라 자급률 예측을 하도록 한 개정안보다는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정·고시하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활용해서 이를 바탕으로 농지 목표 면적을 설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본방침 수립 절차에 관해서는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19번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의 명칭 변경 등에 관한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구분을 없애고 또 그 명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 변경하며 아울러 현재 농식품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생산집중지역 지정 요건 및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도지사가 시·도별 농업생산집중지역 목표 면적 확보 범위 내에서의 농업생산집중지역 해제를 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통합 및 위임 범위 확대는 농업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서 농업진흥지역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또 시도별 자율 관리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범위 확대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일부 지자체의 의견이 있다는 점과 농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수용하신다면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101페이지부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20번의 개정안은 앞선 19번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을 통합할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농업생산집중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농업생산집중지역에 농촌 주민 공동생활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농촌 주민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21번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 시설 추가에 관한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구분 관리를 전제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약 등 판매시설, 치유농업시설, 무더위쉼터, 가축판매시설, 농수산업 고용인력 거주시설 그다음에 그 밖의 농촌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중 가축판매시설과 치유농업시설을 제외하고는 현재도 현행 법령에 의해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고 또 가축판매시설이나 치유농업시설도 현행법 32조 제1항 9호에는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여지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농식품부는 그 시설이 직접적인 농업생산 시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음, 129페이지의 22번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구분 관리를 전제로 농업보호구역 내에—앞선 것은 ‘농업진흥구역 내’고 지금 이걸 ‘농업보호구역 내’입니다—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 등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하자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에 필요한 시설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농촌 체험·관광휴양사업의 경우 현행법상 설치 허용 시설인 농어촌의 소득원 개발 및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또 개정안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개념의 범위가 다소 불명확해서 허용 시설의 범위를 무한정 넓힐 우려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수용을 하신다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직접 명시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의 24번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시 농식품부장관 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은 시도의 농업 정책상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장관의 승인 절차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식량안보 확보 및 농지보전 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24번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추가 등에 관한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고 해제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면적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요건을 완화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서 우량농지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42페이지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지 전용 협의 규정 정비에 관한 개정안은 소위 자료에서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시다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규범의 실체적 면에서 이게 완전히 중복 규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90쪽, 농지 기본방침 수립 사항 및 절차 개선입니다. 동의견에 대해서는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수용이 어렵습니다. 농업생산집중지역으로의 단순한 명칭 변경은 해당 지역 내에서 적정 범위라든가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이후에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의 20번 농업생산집중지역 농촌 주민 공동생활 필요 시설 등 설치 허용입니다. 일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선교 의원님이 제시해 준 안 중에서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생산집중지역’이라는 용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18쪽,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추가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시설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농약 판매시설, 근로자 숙소, 무더위쉼터는 시행령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법으로 상향할 실익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축판매시설은 시설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검토 후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 생활편의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김선교 의원안을 수용할 경우에는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9쪽, 농업보호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 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체험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 증진과 공익 증진 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2쪽,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시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절차 제외는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34쪽, 농업진흥지역 해제 사유 추가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2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용 곤란하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일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서삼석 위원 다 안 된다고……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다 안 된다고는 아니고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의견 주시면 그 다음에 정부가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내용 한 번 더 점검하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입법안을 냈는데 여러 가지가, 그 안만 들어 있는 게 아니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일단 정리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오늘 정부 측 의견은 대충 들었으니까 저는 위원님들한테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 스물다섯 가지 안건 중에서 정부가 수용 내지 일부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4건 정도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기본적으로 이 내용 자체도 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라든지 소유 제한의 문제라든지 본질적인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농촌의 농민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오죽하면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만들어서 지원까지도 해 놓는 판에,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겠지만 일정한 수준의 농지가격을 유지하고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재산을 행사하고 또 여러 가지 임대차 규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완화를 해서 임대차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경제적 활성화를 도모해 보는 것이 국가 예산을 동원해 가지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도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농지 거래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규제 자체를 좀 해소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제가 제시했던 안들은 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부분에 대한 일정한 범위의 농지 소유를 허용해 달라 또 그 허용해 달라는 측면에는 고령화된 농민들에게만 농지를 맡기지 말고 좀 더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사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귀농이라든지 귀촌이라든지 청년농들에 대한 농촌사회로의 유입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분들의 임대차 부분에 대한 ‘한 번 사고 나면 이것 거래가 안 될 것이다. 나한테는 그냥 아예 애물단지로 남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소유 제한들의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작은 규모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그 자리를 농지심의위원회까지 나서 가지고 거리 재고 관련 자료 내고 모든 걸 다 할 이유는 없다, 저는 좀 더 자유롭게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정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한 네 가지와 함께 이 법안에서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윤준병 김선교 위원님.

○김선교 위원 차관님, 4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봤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김선교 위원 현행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데도 현재 임차농 비율이 50%가 넘는 상황입니다. 공감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김선교 위원 경자유전 원칙이 유명무실한 현실에서 농민이 농가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 임대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농가의 고령화율과 영농 승계율을 고려하면 앞으로 15년 후에는 전체 농가의 한 84%가 비농민 소유가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소유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김선교 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민 등이 실제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대차 범위를 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올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서 올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저희들이……

○**김선교 위원** 어떻게 해서 임대차 비율을 좀 축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열심히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좀 해 주세요.

또 134페이지 좀 보세요. 이게 농지법 확대에 대한 겁니다.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30년간 변함없이 유지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을 구성이 된 데, 정말 그 주변에는 진흥지역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 마을 안에 진흥지역이 있고 이런 데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김선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농지법 개정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농업진흥지역 해제 가능 면적을 3ha에서 6ha로 하는 것은 저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다른 의원님들도 현지에 나가서 피부로 와닿고 농민들의 건의사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고서 올리는 거거든요.

또 농림부에서 전면적으로 농지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여태 한 번도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했어요. 그렇지요? 몇 번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했는데 본 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으니까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은 괜찮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송옥주 위원님.

○**송옥주 위원** 저는 39페이지의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수석전문위원과 농식품부의 검토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 농협의 농지 소유 허용에 대한 개정안을 낸 부분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농지와 관련된 관리가 농업인 개인과 농업법인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현실적인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개정안을 낸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지 전수조사 특별법이 제정될 부분이고 농식품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비농민 소유 농지에 대해서 강제매각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차관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송옥주 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강제매각 명령으로 시장에 쏟아질 농지들을 농민들이 온전히 소화할 수가 없고요. 또 영농법인도 당연히 안 되고 있습니다. 농업소득

이 2023년 기준으로 960만 원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농업경영체에서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요. 또 정부를 통해서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런 농지의 소유라든지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농지관리기금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조 원에 달한 농지관리기금의 수입 중 절반을 차지하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탁 원금이 지난해에 고갈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송옥주 위원** 그리고 정부가 매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비축농지를 구입하고 또 청년농을 비롯해서 농업인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사들인 비축농지가 전체 농경지 면적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정부가 이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농협에서 농지에 대한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농업단지라든지 영농형 태양광이나 공동영농 등 다수 조합원들의 공익을 위해서 농협이 이 부분들을 매입하고 그리고 정부정책에 따르고 또 아까도 차관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영농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할 경우에 이것을 농지은행에 매각토록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용이라든지 투기라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크게 훼손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되고 또 지금 농협에 대한 부정적인 여러 가지 여론과 개혁 대상으로 치부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논의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농업정책을 펼치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관님, 지금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좀 더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취지 잘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전체적인 내용은 농식품부가 농지 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 보완해 가면서 세부 내용을 좀 더 세심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그중에 농식품부가 동의했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내용 보면, 68쪽의 농지 소유 제한·상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지금 동의한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동의하셨고.

그다음, 77쪽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 이거는 수용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 94쪽의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에서 3호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이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도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다음, 114쪽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의 설치 내용으로 ‘농촌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다만 농업생산집중……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용어는 안 바꾸기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용어는 안 바뀌되 그 세부 내용은 반영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입법에도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견 하나가 있는데요.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77쪽, 일시사용 허가 대상 추가에서 지금 받겠다고 하는 게 임호선 의원님 안을 받겠다고 하신 거고, 이개호 의원님 안의 치유농업시설 그리고 장애인용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치유농업 시설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특정짓기가 어려워서라고 아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치유농업법에 치유농업시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치유농업법은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고요. 그냥 농업활동을 하면서 치유 관련되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임미애 위원 제 생각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일시사용 허가를 낼 때. 그래서 저는 치유농업시설의 개념이 조금 더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면 이 법을 동반 개정하면서라도 이 안은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지금 위원님 말씀은, 치유농업시설은 모호하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요. 다만 장애인용 화장실이나 휠체어 경사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윤원습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화장실이라든지 경사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용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전용으로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윤원습 예.

○임미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일시사용 허가로 해서 들어서는, 어떤 시설의 전용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윤원습 지금은 이 시설들이 전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법 제안을 주신 거는 이것을 타용도 일시사용으로 하자라고 제안을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용도 일시사용의 성격에는 맞지 않다고 본 겁니다.

○임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114페이지에 있는 주민들의 공동 편의시설이나 그다음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지금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걸 법으로 또 추가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윤원습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지금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고 있지 않나요, 시행령으로? 시행령으로 하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윤원습 체험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전용을 한다

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용으로 하고 있는 거고 법적 근거는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전종덕 위원 주민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이거 아까 수용이 가능하시다고 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지금 113페이지 말씀하시는……

○전종덕 위원 예, 113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11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진흥구역 내 허용행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농업인이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촌 주민까지 확대를 해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농업진흥구역 내에다가 놀이터라든지 마을회관까지 다 지어야 될 편의시설인가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지금 필요한 경우에 들어가 있는 게 일부 있습니다.

○전종덕 위원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평야지대 같은 경우에 지을 농지가,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제 완화 측면에서 지금……

○전종덕 위원 이런 게 농지를 규제 안 하는 거지요. 저는 이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농업진흥구역 내에 꼭 이것까지 설치를 해야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위원님, 허용행위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용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현행에서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아닙니다. 전용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진흥지역에서는. 그런데 진흥지역……

○전종덕 위원 체험시설이나 장애인용 휠체어 경사로나 화장실 이런 건 가능하다면서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런데 이 주민 편의시설은 안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러니까 진흥구역에서 허용하는, 전용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벗어나는 경우에는 지금 위법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자……

○전종덕 위원 죄송해요,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77페이지에 있는 농산어촌 체험시설하고 장애인용 화장실·휠체어 경사로는 전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열거한 10개 조항에 이거는 포함이 돼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러니까 진흥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종덕 위원** 여기는 진흥구역이 아니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용이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일반적인……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농림부가 받는 것은 대안에 반영하고 폐기하든가 이런 절차를 거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만희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가 좀 분명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전수조사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하면 목적이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를 받을 때는 실제로 이번 전수조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96년도 이후 농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전수조사 다 할 겁니다.

○**임미애 위원** 96년도 이후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가 집중적으로 될 것이다, 이게 맞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아마 거기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만……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조사는 하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실제로 경기도 쪽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하게 본다면 대구의 군위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농지인데도.

이만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농지 문제가 실제로 투기 목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오히려 지방의 경우는 처분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지정책을 다루면서 이 두 개의 극과 극의 상황에 처해 있는 농지를 농림부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대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농림부는 좀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전국을 똑같은 기준으로 하는 거 사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처분명령 내리는 거 좋습니다. 처분명령 내리면 그 땅을 누가 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팔고 싶지요, 살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정부는 이거 못 삽니다. 왜냐하면 진흥구역 내의 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고 시도별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산을 분배해서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경남은 천몇백억 썬라, 경북은 얼마 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면 실제로 토지 처분명령이라는 게 실효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데 농림부는 반복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지 않으니까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예를 든다면 처분 문제 이런 것도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좀 안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수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수조사하실 때 미리 제도 정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임대수탁과 관련해서 수수료도 조정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개인 간에 원래는 임대를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한 10개 정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농지 임대차의 예외 사유를 좀 추가하자라고 했던 게 김선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거 아까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농지 임대차의 예외 사유 추가하고 소유기간을 최소화하고 단축하는 문제도 전향적인 검토를 좀 해야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명령이든……

그리고 현장에서 사인 간에 임대차 계약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서 하는 경우에 조사 들어간다고 그러면 재촌 지주의 경우는 대부분의 농지를 회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들을 사전에 좀 만들어 놓지 않으면 현장에서 임차인들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논밭에 다 작물 들어가잖아요. 작물 들어간 상태에서 조사 들어가면 혼란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것을 감안해서서 정책을 집행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간단히 좀 해 주시고, 일단 일회독하기로 했는데 지금 전수조사와 관련된 두 개 법이 남아 있어서 가능하시면 두 개 설명을 듣고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하시든지요.

○**이만희 위원** 제가 이 법안을 제출한 지가 1년 6개월 전입니다, 위원장님. 1년 6개월 만에 제가 제출한 법안이, 이 자리에서 농지법 관련된 법안이 처음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수도권 집중 문제 극복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하고 지방분권도 얘기를 하고 또 여기서는 5극 3특이라는 행정통합까지도 추진하는 정책들을 추진해 왔어요.

제가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속속들이 전해 드렸고, 제가 1년 6개월 전에 법안 제출을 하면서 수도권 중심의 농지 정책·규제정책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시켜 가지고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피해를 겪어서 안 된다고 했고 이미 법안 규정에도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 아니면 특별시라는 대도시 지역 인근에 있는 농지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똑같이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그런 잣대를 갖다 댈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현실에 맞는 규제정책이나 진흥정책을 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지역의 투기 억제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른 지방의 농민들 생존권 자체를, 농지 가격 떨어뜨리는 것이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어떤 식이든 간에 인구감소지역에 나와 있는 농지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당·야당 위원님들 모두도, 기본적으로 우리 농해수위가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은 정부의 입장보다도 우리 농민의 입장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시면 다 농민들의 목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결심도 하고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만큼은 진흥지역 내에서도 주말·체험영농에 대한 농지 소유 허용도 좀 완화시키고요. 또 체험영농을 위한 임대차 시 농지 최소 소유기간 제한도 좀 바꾸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전수조사와 관련된 내용도 일회독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6권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법률안입니다.

이 법률안은 김정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제정법률안하고 윤준병 의원님이 발의하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입니다.

총괄 부분의 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현재 농지 전수조사는 별도의 신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농지법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그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물론 제정안을 발의하셨지만 일부개정법률안인 윤준병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수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김정호 의원님 발의안에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발췌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두 법률안의 체계 비교에 관한 내용으로 두 법률안 모두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농지법에 따른 처분명령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 안은 이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농지 전수조사의 기본계획, 농지전수조사위원회, 국회 보고 등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는 두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먼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조사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관한 개정안으로 두 법률안 모두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아닌 조사원이 농지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또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가 계획하는 대규모 농지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출입 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법적 지위나 자격,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김정호 의원님 안을 참고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윤준병 의원님 안의 경우 농지 조사에만 출입 권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정해서 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11페이지부터 윤준병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윤준병 의원님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시 상대방의 범위 제한 확대에 관한 개정안은 농지의 처분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대상 농지의 처분을 제한하는 상대방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19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듯이 현행 법령은 세대원과 법인 소유인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을 농지처분의 상대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확대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그리고 소유자가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처분 의무 이행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11조와의 관계에서 조문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수정의견을 21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번 농지 처분명령 및 매수 청구제도 보완에 관한 개정안은 현재는 농지 처분명령이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농지 처분명령과 농어촌공사의 농지매수에 관해서도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강행 규정으로 전환하고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에 대해서는 곧바로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농지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자를 조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농지 처분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문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직접 처분명령을 하도록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이보다는 일단 농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처분명령을 하도록 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에 직접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의 농지 매수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재정적 한계를 고려해서 공사의 예산 범위 내에서 농지 매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27페이지부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3번은 농지의 위법 임대 등에 대한 신고·고발 포상금 신설에 관한 개정안으로서 위법 사항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부 체계·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로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제정안 중 앞서 말씀드린 공통 사항을 제외한 내용으로서 이 제정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의 1번 제명 및 총칙, 41페이지의 2번 기본계획의 수립 및 농지전수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해서는 만약 윤준병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농지법을 개정할 경우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3페이지의 3번 농지전수조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준병 의원안을 중심으로 개정할 경우 반영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번 시범사업의 실시 및 책임실행기관의 지정 그다음에 47페이지의 5번 농지

전수조사의 대상도 윤준병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반영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1페이지의 6번 조사 결과의 활용 및 국회 보고에 관한 제정안은 조사 결과를 농지에 관한 정보에 반영하도록 하고 농식품부장관이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조사 결과의 반영 부분은 윤준병 의원님 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시다만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므로 그 내용을 수정해서 조사 결과를 농지대장에 반영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52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호 의원님 안의 국회 보고에 관한 사항은 금번의 농지 조사가 일회적인 면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국회 보고 조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5페이지의 7번 보칙 및 벌칙은 윤준병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개정할 경우에는 불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윤준병 의원님 안에서 신설하고 있는 농지조사원과 관련해서는 농지조사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 수뢰죄 적용 등 공무원 의제에 관한 조항은 필요하다고 보아서 그 내용을 발췌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페이지의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칙은 두 법률안이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윤준병 의원님 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 김정호 의원님 안은 6개월이 경과한 날을 시행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준병 의원님 안을 중심으로 농지법 일부 개정법률안 형식으로 개정하는 방식으로 두 법률안 내용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19쪽입니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시 상대방의 범위를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만 22쪽에 수정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3항 1·2·3·4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대안으로서 소유자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라고 설정하면 모든 범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그렇기는 합시다만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이게 사유재산권,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 적절한지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제 목적에는 더 부합할 수 있겠는데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 넓어지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다음, 24쪽입니다.

농지 처분명령 및 매수 청구제도 보완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농지의 위법 임대 등에 대한 신고·고발 포상금 신설에 대해서도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39쪽입니다.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김정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는 윤준병 의원안이 기반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제정 필요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4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43쪽·45쪽까지 동의를 합니다.

47쪽의 5번 농지 전수조사의 대상까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51쪽의 농지조사 결과의 활용 및 국회 보고에 대해서는 상임위 수정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의 보칙 및 벌칙 부분입니다. 상임위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

59쪽의 시행일은 상임위 수정의견과 같이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면서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요.

9쪽은 상임위 수용하면서 제54조의5제1항은 정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15쪽에 있습니다.

농림부장관이 농지조사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고시까지 하게 된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농림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기간 중에 조사 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군·자치구의 주민 등을 농지조사원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농지조사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말씀 빨리하시지요.

○이만희 위원 차관님, 이번 전수조사의 목적이 뭐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번 전수조사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동안 21년도 이후에 농지대장을 현행화시키는 작업을 어느 정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99% 정도 농지대장을 현실화시켰는데……

○이만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이 또한 10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완벽한 현행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일부 지역에는 투기가 있고 일부 지역에는 농지 거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만희 위원 그 말씀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농지 규제에 대한 전국적 단위의 일원화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농지 규제에 대한, 농지정책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저희들 당초에 설계할 때는 모든 농지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96년도 이후에 거래된 농지를 조사하고 내년에는 96년도 이전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습니다.

○이만희 위원 저는 대통령의 이 말씀이 국무회의에서 나올 때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들은 농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지는 시각 자체가 농지가격은 더 떨어져야 되고 농지에 대해서는 막연한 투기 세력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그냥 때려잡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많이 받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임대차 농업인들이, 임차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하면서 최대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나가게……

○**이만희 위원** 저는 10년 사이에 10%씩 해 오는 전수조사 내용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전수조사는 언제까지 완결할 생각이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내년까지 마무리……

○**이만희 위원** 내년 연말까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내년에도 좀 당겨서 하고 제도 개선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27년도 말까지요.

이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민간 조사원들이 한 5000명가량 채용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이만희 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채용할 것이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지는, 만약 윤준병 위원장의 개정안대로 법안이 성안된다면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주거 안정권에 대한 침해도 가능할 정도의 그런 권한도 부여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이 조사원에 대해서 채용 안내를 하면서 일단 5월 초까지는 조사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교육을 한 2주 정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생활 침해라든지 완화할 것이고, 다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판단의 문제보다는 현황 파악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현황 파악을 기초로 해서 지자체 공무원하고 저희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최종적으로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희 위원**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대부분 농지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건물 등의 출입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제한을 좀 두는 건 어떻습니까? 지금 내용에 따르면 토지 등 아니면 토지 또는 건물 등에 대해서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 민간 조사원들에 대해서만큼은 토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농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일정한 법적 근거를 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어떤 사생활들이 이루어지는 건물이라든지 농가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물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버섯 재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건물 안에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 거지 사생활의 영역 이런 부분까지 침범하지는……

○이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버섯 재배사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조사 대상에서 일부분을 차지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라든지 농어촌 관계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로 하여금 그런 장소에 출입해서 조사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마치 그냥 현장조사는 민간 조사원에게 몽땅 맡기고 본인들은 다 빠져 있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희 위원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나 농어촌공사의 직원들이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고 더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 조사원이 필요하고 그 민간 조사원도 여기에 따르는 합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민간 조사원이 필요하다고,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농지, 오픈된 장소에 대해서는 출입을 법적 근거에 따라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말씀대로 버섯 재배사라든지 축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출입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본소득 관련해 가지고 그 조사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정보라든지 사생활의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번 농지 조사에서도, 지금 전쟁 추정 관련해 가지고 이 법안을 세울 만큼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공무원들도 그 정도의 참여는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픈된 토지라든지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자격 있는 공무원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하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가 그 조사를 나갈 때 공무원하고 같이 동반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 조사원에 대한 출입 장소의 제한을 이 법에 토지, 건물 등으로 표현하지 말고 토지로 한정하자고요. 말씀하신 대로 건물 등에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든지 공무원이 가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동반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출입의 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만희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공무원과 동반한 민간 조사원은 건물 등의 출입이 가능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잖아요. 민간 조사원 단독의 건물 출입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자는 그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단독으로 할 경우만 제한하자……

○이만희 위원 예.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을 받으세요. 일단 공무원은 토지, 건물 등으로 하고 조사원

은 토지로 한정해서 입법화하면 그 내용이 수용되잖아요, 지금 2인 1조로 들어가는 문제는, 법적인 근거로는?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그러니까 이만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으로 반영을 해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위원장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혹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유형의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우려하시니까 일단 우려하시는 내용 담고 그다음에 입법된 이후에 시행하면서 그 내용이 추가로 필요하면 또 추가적인 내용을 하시자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우려하고 있는데 자꾸 필요하다고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내용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 짧게 한마디만 여쭙볼게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전종덕 위원** 지금 농지 관련해서 매년 조사하고 있고 99% 조사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소요기간이 1년 6개월이나 걸릴 만큼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이면 1년 6개월이 더 걸리는데?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지 이용실태조사는 매년 한 20만~22만 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을 나가는 것은 그중의 한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번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전국의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일단 저희가 다 하는 거고요. 현장에 나가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72만 ha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용실태조사 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종덕 위원**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건 72만 ha만 조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이 정도 조사하면 전수조사를 했다 이렇게 할 만큼의 규모인가요? 150만 ha가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저희가 일단 전국의 농지,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5만 ha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 공부라든지 여러 항공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련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실제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고요.

거기서 의심 가는 농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특정 농지에 대해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는 겁니다.

○**전종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 가지고.

○**소위원장 윤준병** 의결 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 제40항, 제41항, 제49항 및 제50항, 제54항, 제57항 및 제58항 이상 10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농지 조항도 다 포함된 거지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말씀하신 내용 넣어서 하는 겁니다.

○이만희 위원 토지를 제한한다는 것하고?

○소위원장 윤준병 예.

○전종덕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통과는 시켰는데 어디를 어떻게 수정하고 어디까지 수용되는지가 지금 확인이 안 돼 가지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그 내용은 정리해서 한번 전체회의 전에 회람할 거니까요. 전체회의 때 정리된 내용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게요.

○전종덕 위원 아니, 농식품부가 수용하는 안이 있고 수용하지 않는 안이 있는데 한번 쭉 보고 했어야 되는데……

○소위원장 윤준병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종덕 위원 아니, 문서로 안 봐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소위원장 윤준병 농지관리 기본방침과 관련된 내용, 농업진흥지역 내 농촌 주민 편의 시설 추가하는 것, 상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폐지하는 문제 그다음에 농산어촌 체험시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그다음에 농촌 주민 편의시설 포함하는 것 이런 내용이 아까 제가 농식품부에 ‘이 내용은 수용하나’고 물어봐서 확인이 돼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후에……

○전종덕 위원 문서로 좀 제공해 주세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할게요.

○이만희 위원 위원장님, 정부가 동의하는 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물론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윤준병 예.

○이만희 위원 그러면 제가 제출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한번 얘기를 들어 보고, 위원들 의견도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일단 아까 불수용한다고 했으니까……

○이만희 위원 그건 정부 의견이고요.

○소위원장 윤준병 말씀하시지요.

○이만희 위원 아니, 정부 의견이고 위원장께서 다른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말씀하시지요.

○이만희 위원 제가 위원장이 아닌데 저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소위원장 윤준병 아니, 말씀하시라고요.

○이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까 제가 주장했던, 농지법 개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조항을 말씀드렸잖아요. 진흥구역 내에서 또 임대기간의 문제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는데,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봐 주십사…… 정부는 반대했습니다마는 그 반대되는 내용도, 다른 위원들 의견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소위원장 윤준병 이만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문금주 위원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이 말씀 주신 내용 우리 농림부가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결론 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만희 위원 아니, 제가 1년 반 전에 이 법안을 냈고 1년 반 동안 기다려서 지금 이 내용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법안 내 가지고 지금 통과시키는 건 법안이 맞고 1년 반 동안 저기 처박아 놓고 한 번 논의 자체를 안 하다가 지금 나오는 게 맞습니까?

○문금주 위원 안 맞지요.

○전종덕 위원 이만희 위원님께서 여러 번 제기를 하셨고 논의도 사실 충분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만희 위원님의 고민도 이해는 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조항들이 경자유전 원칙의 문제라든지 농지 규제 완화의 문제라든지 농지를 훼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계속 농지는 생산수단으로 써야 하고 식량안보를 제일의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려 왔기 때문에 저의 원칙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제기하시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말씀같이 이렇게 공방이 돼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준과 원칙은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량자원의 확보라든지 식량안보를 주장하면서 또 농지의 이용 규제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영농형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린 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현장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농지법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저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인용하면서 그 외에 현장에 있는 사항들을 전국에 일관적이고 통일된 사항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구분해서 현실에 맞게 도와 달라, 농민을 도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얘기거든요.

○전종덕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 영농형 태양광도 농업생산단지를 우선해서 해야 된다고 했고, 기본적으로 식량안보를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임차농들에 대한 보호와 규제 완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들을 최소화하는 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도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보고 지역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편차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이것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는 같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혹시 농림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 인근에 있는 농지가 아니라 경북이나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이렇게 농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농지이용활성화지구 이런 식으로 지구 지정을 해서 주말·체험농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1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 주말·체험농장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허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해 봤습니다.

○임미애 위원 해 봤는데 결론이 좀 났나요, 아니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판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24년도에 저희가 농촌소멸 대책을 만들면서 인구감소지역에 상당 부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군 조사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해 보니까 저희들이 아는 상황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진흥지역의 소규모 농지인데 주말·체험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옆에 사람이 동일 작목을 심고 전혀 표시가 안 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말·체험농장 때문에 옆에 다른 작목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굉장히 상황은……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 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었고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스럽다, 현재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는 만큼 전수조사를 한다면 제도개선 방안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하다 보면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은 경우가 저의 경험상 워낙 많아서 이걸 인구소멸지역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농지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 국민이……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고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조금 수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만희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그런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게 아니라, 투기의 목적으로 여기를 개발하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농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농지이용활성화지구—그냥 이거는 제가 잠깐 만든 건데—그렇게 지역을 정해 놓고, 실제로 경북의 경우 다수의 토지가 농지입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거래가 되지 않으

면서 이게 가치가 굉장히 하락돼 있고 경상북도 전체를 본다면 자산의 규모가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지역에 대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함께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지금 위원님들 말씀 주신 고견들을 잘 듣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특히 농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식량안보 측면에서의 용역 그다음에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의 연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위원님들의 염려가 덜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안건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체계·자구 및 부칙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건만, 5분 걸리는 내용인데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595)

(16시20분)

○**소위원장 윤준병** 의사일정 제59항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59항 김선교 의원님 대표발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자료 7권의 1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은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지정하여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일부 자구를 정리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김종구**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준병**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9항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선교 문금주 서삼석 송옥주 윤준병 이만희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김종구

정책기획관 홍인기

농촌정책국장 전한영

농업정책관 윤원섭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 강동윤